
「국가물류기본계획(2026~2035)수립 연구」 제안요청서

2025. 1.

교 통 물 류 실
물 류 정 책 과

목 차

I. 용역의 개요	1
1. 용역의 목적	1
2. 일반사항	1
II.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3
1. 목적	3
2. 제안서 평가	3
3. 입찰자 유의사항	5
III. 제안서 작성 지침	6
1. 일반사항	6
2. 입찰참가자 자격	6
3. 제안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7
4. 제안서 작성요령	8
5. 행정사항	9
IV. 과업 수행 지침	10
V. 보안대책	14
VI.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5
1. 공정보고	15
2. 일반사항	15
3. 사업 성과품 제출	16
4. 예정 공정표	17

I. 용역의 개요

1. 용역의 목적

-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5년 주기,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現 계획('21~'30)에 이은 '26~'35년 계획을 수립할 시점
 - 계획에 국내외 물류 정책과 산업 환경의 변화를 폭넓게 반영하고, 최신 기술동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전문 연구용역 실시

2. 일반사항

가. 과업명 : 「국가물류기본계획(2026~2035) 수립 연구」

나. 과업의 주요내용

- 1) 현행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의 분석 및 평가
- 2)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요인 분석
- 3) 해외사례 분석
- 4) 국가물류의 미래상, 비전 및 목표 설정
- 5) 분야별 정책방안 및 추진 로드맵 수립
- 6) 성과관리방안 수립

다. 과업 세부사항

1) 현행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평가

-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의 추진과제별 성취도 및 효과성 분석

2)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요인 분석

- 국내·외 산업여건, 관련 기술발전의 동향, 생산·소비 동향, 수출입 구조, 글로벌 교역량 추이, 국제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분석

3) 해외사례 분석

- 물류 선진국, 동북아 경쟁국의 물류체계 특징 등의 분석을 통한 국가·분야별 경쟁력 비교·분석 및 물류정책 시사점 도출

4) 국가물류의 미래상, 비전 및 목표 설정

- 국가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물류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체계화된 추진전략 제시

5) 분야별 정책방안 및 추진 로드맵 수립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물류 확산, 디지털 전환 촉진 등 부문별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제시
- 국가물류 정보화, 물류 기능별·운송수단별 종합·조정, 물류시설 등 인프라 개발, 연계물류, 물류 표준화·공동화, 물류보안, 인력 양성, 기술개발, 국제물류 등과 관련한 전략 제시

6) 성과관리방안 수립

- 국가물류정책 비전과 전략을 추진과제 및 단위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각 과제별 성과관리 방안 수립

라. 용역금액 : 100,000,000원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

* 물류산업지원 정책연구비 : 4000-4034-309-260-02

마.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30일 이내

II.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2026~2035) 수립 연구」의 입찰에 참가하는 용역 수행자의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제안서 평가

가. 관련 근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다.
- 2)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되, 본 용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평가항목, 배점범위 등 내부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평가위원회

- 1) 평가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에 따라 평가한다.
- 2) 평가위원회는 평가사항 이외의 특이사항 발생 시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안건은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 제안서 내용 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비고
1	투입인력 평가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연구원의 교통물류분야(물류산업·화물운송·기술·물류시설 등) 연구용역 또는 유사업무 수행경력 ○ 참여연구원의 교통물류분야(물류산업·화물운송·기술·물류시설 등) 연구용역 또는 유사업무 수행경력 	계량 평가	주1)
2	과업 접근방법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및 기대효과에 대한 이해 ○ 연구수행방법의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비계량 평가	주2)
3	과업 수행계획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세부 추진계획 및 구체적인 추진방법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인원 투입계획 ○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해결전략 	"	주2)
4	용역 및 사후관리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주2)
계		100			

2) 평가방법

주1) 계량평가(30)

○ 책임연구원 업무수행경력(15)

구 분	10년 이상	7년 이상~10년 미만	4년 이상~7년 미만	4년 미만	2년 미만
배 점	15	13	11	9	7

※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으로 교통물류 분야와 관련된 연구 수행 년수

○ 참여연구원 업무수행경력(15)

구 분	10년 이상	7년 이상~10년 미만	4년 이상~7년 미만	4년 미만	2년 미만
배 점	15	13	11	9	7

※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교통물류 분야와 관련된 연구수행 년수

※ 단, 최소 참여인력 요건(책임연구원, 연구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본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주2) 비계량평가(70) (절대평가)

○ 용역수행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

구 분	배 점	평가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과업 접근방법	30	30	25	20	15	10
과업 수행계획	25	25	20	15	10	5
용역 및 사후관리	15	15	12	9	6	3

※ 유의사항

-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평점을 계산한 결과 각 평가요소별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계량평가 주1)는 공동도급시에는 도급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실적, 경력 등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한다.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경력은 평가하지 아니한다(단,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 당해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 및 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3) 평가점수 산정

○ 점수 : 내용평가득점 × 70%

※ 내용평가 득점은 업체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라. 제안서 가격 평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가격평가(배점한도 30%)

마. 협상금액

가격의 협상은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가격의 협상)에 따른다.

3. 입찰자 유의 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수정

국토교통부는 필요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사전규격 공개 이후 제안요청서 수정 시 수정되는 내용에 따라 사전규격 공개를 다시 진행 할 수 있고, 입찰공고 이후 제안요청서 수정 시 수정공고 또는 재공고 대상이며, 수정공고·재공고 시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이 추가된다.

나. 제안서 작성비용

국토교통부는 제안서 작성에 따른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일체의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타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 부담 관계에는 최종계약체결 이전에 수행되는 모든 사항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관계 법령의 숙지

입찰참가자는 관계 법령 및 국가의 계약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라. 입찰보증금 : 입찰공고문과 같다.

마. 계약 방법 : 입찰공고문과 같다.

바. 기타

입찰참가자는 국토교통부가 배부한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가. 이 제안서 작성지침은 「국가물류기본계획(2026~2035) 수립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의 입찰참가자가 제출할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제안서는 용역을 수행할 최적의 연구자 선정에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본 제안서와 과업내용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PDF로 변환하여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하며, 입찰참가 및 공동수급협정 등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지문투찰 등)으로 이루어진다.

라. 과업의 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 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함

3. 제안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과 같다.

나.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과 같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 서류 : 입찰공고문과 같다.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구성

1) 제안서의 형식

가) 작성 프로그램 : 한글 2005 이상(PDF 변환)

나) 글씨크기 : 주제목 18, 부제목 16, 본문 15, 주해 13 point

다) 글자체 : 국·영문 - 신명조(다만, 주해는 중고딕으로 작성)

나. 과업제안서 작성 시 편철 순서

1) 과업제안서 (양식1 활용)

2) 제안서 내용(A4용지로, “아래한글” 활용요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양식2 활용)

4)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양식3 및 양식4 활용)

5) 연구진 이력사항 (양식5 활용)

6) 보안서약서 (양식6 활용)

7) 청렴계약서 (양식7 활용)

8) 첨부자료

· 기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5. 행정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제안서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용역 입찰 및 계약 관련 제안 무효, 부적격(실격), 감점, 계약해지, 행정 처분, 손해배상, 담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바. 제안서의 작성은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에 따른 기간 계산은 용역 입찰공고문의 공고일로 함

아. 평가 대상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은 반드시 해당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 제안서 제출 시 참여연구원 경력확인서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다만,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차.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 설명을 요구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1) 회계 관련 : 운영지원과 044-201-3186

2) 과업 내용 관련 : 물류정책과 044-201-4003

IV.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기준

본 용역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시 또는 제안요청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용역사는 최신의 자문기술·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요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은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발주처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요원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사업관리인

용역사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사업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임명된 사업관리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동 사업관리인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연구과제 감독관의 지정

발주처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연구·검토과제별로 관련분야에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하고(이하 연구과제 감독관이라 한다.) 용역완료 시까지 진행상황을 감독하여 양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한다.

5. 용어의 해석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협의를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6. 용역 과업의 추진

용역과업이 용역사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사는 인력, 장비 및 제 역무를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과업의 변경

용역사는 본 과업 수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8. 성과물의 보관

용역사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및 자료에 대해 대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후에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용역을 계약기간 이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

다고 판단될 때

다.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라. 과업 수행의 사업 책임기술자가 용역업무 소홀 등으로 용역업무 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10. 자문회의

가.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다.

나. 자문회의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기간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1. 관련기관 협의

용역사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관련부서·단체 및 전문업체의 기술자료와 의견을 조사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2. 과업 착수 서류 제출 및 보고

가. 용역사는 과업수행계획서 포함한 착수관련 서류를 「용역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구체적인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수행 절차를 포함하여 착수보고를 준비해야하며, 착수보고 일자를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3. 용역 성과물의 작성·제출

가. 제안요청서에 의한 모든 성과물 및 보고서의 원고는 사전검토를 거쳐 인쇄에 임하고, 용역의 성과물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

전 협의하여야 한다.

- 나. 용역사는 과업착수 후 4주 이내에 과업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착수보고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4.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공동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V. 보안대책

- 가. 과업수행책임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자료와 용역성과품 등에 대해 용역 완료시에는 발주처에 전량 납품하고 추가발행을 금지한다.
- 다.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라.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마.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바.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사.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아.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자.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등)하여야 한다.

차.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VI.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 후 4주 이내

-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한다.

나. 수시보고 : 진행사항 및 결과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사업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1)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2)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3)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모든 단위는 C.G.S. 또는 M.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영국단위(British Unit)등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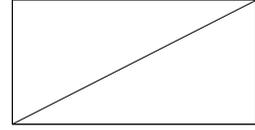
나. 성과품 제출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과업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	10부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시	10부	
최종보고서	과업준공 시	30부	
최종보고서CD	과업준공 시	2매	

4. 예정 공정표

구 분	'25년										
	1 차월	2 차월	3 차월	4 차월	5 차월	6 차월	7 차월	8 차월	9 차월	10 차월	11 차월
가. 현행 국가물류 기본계획 평가	■	■	■								
나.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요인 분석	■	■	■	■	■						
다. 국가물류의 미래상, 비전 및 목표설정				■	■	■					
라. 분야별 정책효과 및 추진 로드맵 작성					■	■	■	■			
마. 국가물류기본계획(안) 작성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								■	■	■	■
보고시기	↑ 착수 보고				↑ 중간 보고					↑ 공 청회	↑ 최종 보고

<양식 1>



과업제안서

용역명 :

업체명 : (인)

<양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2년	2023년	2024년
9. 상시 종업원 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양식 3>

관련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전공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본과업 참여자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연구원					
연 구 보조원					
기 타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 사본(재직증명서)

참여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

- 주) 1. 【서식 4】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았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